

## 양계자조금 사업이 나아가야 할 길

# 자조 활동자금 설치 공동준비 위원회 구성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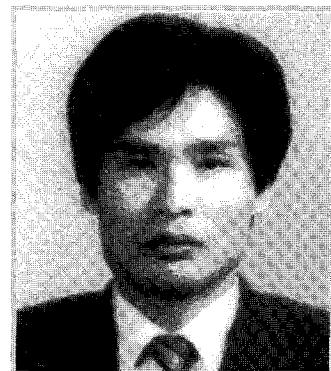
김 운 철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부장

**우**리나라 자조금은 1990년 4월에 법률 제4228호로 제정·공포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자조금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2000년 6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로 그대로 이전되어 그간 각 축종별 협회에서 운용하여 온 임의자조금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금(자발적으로 조성한 자조금 해당액 이내에서 보조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 실시한 임의자조금 제도는 희망하는 사람들만 자발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라 그 조성규모가 적어 효과적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그 사업수행으로 인한 혜택을 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반의 문제 때문에 의무자조금의 도입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결과 2002년 5월 13일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축산업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던 의무자조금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게 된 것이다.

이 의무자조금제도 성패의 관건은 업계와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수요건이며 이의 시행과정에서 대다수 관련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희망하는 사람만이 내는 임의자조금과는 달리 그야말로 모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특수집단의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회비와는 달리 의무적으로 납부하여 전체의 목적을 위해 공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자조금 사업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의 공통된 이익을 위해 서로 경제적 부담을 하고 그 사업으로 경제적 수혜와 이득을 동시에 본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자조금 제도는 축종 간 제로섬 게임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축종별로 상호 보완과 균형 조절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어떤 축종에서 자조금 사업을 하여 특정 축산물의 소비홍보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 상대적으로 타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양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시라도 빨리 양계자조금 사업을 정착,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지금 양돈 · 한우 등 타 축종은 자조금 사업을 한창 추진중에 있다.

양돈은 이미 자조금관리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여 자조금 거출 및 사업추진중이고 한우는 대의원 선출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양계는 현재 자조금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선결하여야 할 크나큰 과제 또한 안고 있다.

산란계의 경우 우리나라의 계란유통 현실상 계란에서의 직접 거출이 힘든 상태이며 현행법상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면 산란을 마친 노계를 대상으로 노계도계장에서 도계시 거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산란노계 가격불안과 노계도계장에서의 도계기피 현상 등으로 자조금 거출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대체 거출 방안이 절실히 실정이다. 그렇지 않고는 산란계 자조금 추진이 매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육계의 경우 계열화사업 위주로 되어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현행법상 자조금은 닭을 판매하여 수익을 보는 계열주체가 부담하고 대의원선거 및 피선거권, 자조금거출 규모 및 거출여부 결정 등 제반 권리는 계열농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등 계열주체와 계열농가간에 의무와 권한행사를 놓고 시행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현상이 일부 나타난 바 있으나 이는 계열주체나 농가 모두가 육계산업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증진이라는 대의를 생각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현행법에 충실하여 시행, 추진해 나가면서 법개정 등 보완을 통해 계열주체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위한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등 향후 발생되는 문제는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다.

어쨌든 이제 임의자조금 제도로는 많은 금액의 자조금을 거출하기 어려운 만큼 가능한 한 의무자조금을 조속히 추진하여 충분한 금액의 자조금을 조성,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등 실제로 효과적인 사업을 많이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국가에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생산자가 조성한 자조금 금액만큼 보조지원을 해 준다니 이 얼마나 좋은 제도란 말인가?

전체 사회 · 경제적인 추세가 점점 정부의 직접개입이 줄어들고 시장경제 체제에 바탕을 둔 경쟁원리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농업분야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특히 양계의 경우 주기적으로 불황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업계상황은 시시각각 변하여 예측이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 마당에 전 양계생산자가 힘을 합하여 공동 대처해 나가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처한 지금 의무자조금제도를 추진한다는 것은 양계생산자 스스로가 앞길을 개척해 나가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양계관련 단체 등 범 양계인이 힘을 합하여 양계자조금 사업을 육성 ·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양계**